

‘인간적인’ 도축법과 ‘잔인한’ 유대교 도축법(Schächt)

송충기*

함부르크 사례로 본 독일 제정기 도축법 논쟁

초록 독일 제정기(1871-1918)에 유대교 도축법은 반유대주의가 발흥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1830년대에 동물보호협회가 연달아 결성되면서 동물보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 후반에 도축하는 방식의 행위까지 문제로 삼기 시작했고, 도축할 때 생기는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인간적인’ 도축법의 도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대교 도축법이 이들 동물보호운동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동물보호협회는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하도록 제국의회에 진정서를 냈고, 제국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유대교 도축법의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명분에 밀려서 전국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몇몇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다. 반유대주의가 유대교 도축법의 금지를 위한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국의회의 논쟁과 같은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유대인 도축법에 대한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함부르크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유대교 도축법이 일상에서는 그리 큰 문젯거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유대교 도축법이 전국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반유대주의라는 정치적 이슈에 놀라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도 정치적으로만 반응한 나머지, 동물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도축법의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는 나중에,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대교 도축법을 사실상 금지했을 때,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주제어 유대인 도축법(Schächt), 함부르크, 동물보호협회, 동물보호운동, 반유대주의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씨앗

1933년 나치는 정권을 잡자마자 도축법을 개정하여 “정온동물은 도축할 때 피를 빼내기 전에 기절시켜야만 한다”는 의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¹ 도축할 동물의 목을 잘라 먼저 피를 뽑고 도살해야만 하는 유대교 도축법을 사실상 금지했다. 여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치 운동의 핵심인 반유대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유대주의의 씨앗은 동물보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19세기 중반에 이미 뿌려졌다. 동물보호론자는 소위 ‘인간적인’ 도축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대인 도축법을 동물학대로 규정했고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하던 법률 제정이 제국정부의 외면으로 막히자, 청원서를 들고 제국의회로 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 청원을 냈다. 양쪽은 각각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소견서를 작성해 덧붙이면서 세력의 결집을 과시했다. 제국의회에서 양쪽이 세 차례나 격돌한 끝에 서로 공방만 벌인 채 별다른 결론을 맺지 못했다. 물론 지역에서는 달랐다. 작센주 등에서는 한동안 유대교 도축법이 금지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동물보호운동은 반유대주의의 새로운 준동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나마 동물보호 운동가의 비난과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 제국이 유대교 도축법의 시행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정신을 고수

1 나치의 도축법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슬람교도에게는 종교적 도축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치 시대의 도축법이나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esetz über das Schlachten von Tieren, 21. 4. 1933. Boria Sax (2000), *Animals in the Third Reich: Pets, Scapegoats, and the Holocaust*, New York/London; Daniel Jütte (2002), “Die Entstehung und die Auswirkungen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ichstierschutzgesetzes von 1933,” *IDB Münster, Tierschutz und Nationalsozialismus, Ber. Inst. Didaktik Biologie, Suppl. 2*, pp. 167 – 184. 나치시대 동물의 일상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서적이지만 최근 출간된 다음의 것이 있다. Jan Mohnhaupt (2020), *Tiere im Nationalsozialismus*, München.

하려는 자유주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역시 유대교 도축법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² 그러므로, 19세기의 동물보호론과 나치의 반유대주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초기 동물보호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랍비와 같은 유대인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도축법에 관한 논쟁이 불붙기 전에는 유대교 도축법을 특별히 ‘잔인하다’고 여겼던 분위기도 없었다. 게다가 유대교 도축법을 공격하는 동물보호론자가 정말 그것이 동물학대라고 여겨서인지 혹은 반유대주의에서 출발한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한 사례는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애초에 유대교 도축법의 논란을 낳았던 곳은 영국이나 스위스였다. 예컨대, 스위스의 아르가우(Aargau) 주에서는 19세기 중반 유대교 도축법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동안 금지했다.³

이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제국의회의 논쟁과 이에 대한 법안의 처리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⁴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

2 Stenographische Berichte der Verhandlungen des Reichstags. XII. Legislaturperiode. II. Session, Bd. 263 (104. Sitzung, Donnerstag den 12. Januar 1911), p. 3813.

3 Pascal Krauthammer (2005), *Das Schächtverbot in der Schweiz 1854-2000: die Schächtfrage zwischen Tierschutz, Politik und Fremdenfeindlichkeit*, Zürich.

4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다음 네 편의 연구이다. Robin Judd (2007), *Contested Rituals. Circumcision, Kosher Butchering, and Jewish Political Life in Germany, 1843-1933*, Cornell Univ. Press: Ithaca and London, 이것은 유대교식 도축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었던 유대교 의식인 할례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주로 유대인 조직의 대응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뮌헨의 동물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운동을 살핀 다음의 연구가 있다. Miriam Zerbel (1993), *Tierschutz im Kaiserreic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Vereinswesens*, Frankfurt am Main. 도축장을 그나마 다른 것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지만, 유대교식 도축에 대해서는 소략하다. Dorothee Brantz (2003), “Slaughter in the City: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battoirs in Paris and Berlin 1780-1914,” Dissertation of Univ. of Chicago. 위의 논문 일부가 다음에 소개되어 있다. Dorothee Brantz (2002), “Stunning Bodies: Animal Slaughter, Judaism, and the Meaning of Humanity in Imperial Germany,”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5, pp. 167-194.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다

하다. 첫째, 실제 사례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로 정치적 논쟁에 치우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주로 제국의회에서 행한 논쟁의 경우 반유대주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가 난무하면서 유대교 도축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현실 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논쟁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제국의회의 논쟁이 실제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 주나 기초단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다. 따라서 제국의회의 논쟁은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려주는 하지만,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제국의회에서 유대교 도축법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1880년대 말 이후 그것을 금지했거나 혹은 금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작센이나 바이에른의 사례만 주로 언급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이 두 곳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곳의 상황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에 이에 관한 연구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당시 가장 많은 유대인의 비율을 자랑하던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유대인 도축법의 시행과 논쟁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⁵

2. 갈등의 시작: ‘인간중심적인’ 동물보호운동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동물보호운동은 점차 유럽으로 번졌고, 독일에서도 1840년대에 여러 지역에서 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음의 연구가 있지만 제국의회에서 진행된 논쟁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을 뿐, 도축장의 언급은 없다. Barbara Venerito (2018), “Antischächtbewegung und Antisemitismus in Deutschland von 1867 bis 1914,” Dissertation of Freien Univ. Berlin.

5 함부르크의 유대인 공동체가 남긴 사료는 이제 <유대인 역사 중앙자료관>(The Central Archives of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이하 CAHJP로 약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https://www.nli.org.il/en/discover/archives/cahjp> (접속일: 2024.6.10.).

1837년에 슈투트가르트, 뉘른베르크, 드레스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에서 잇달아 결성되었다. 함부르크에서는 1841년에 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함부르크 1841년 동물보호협회〉(Hamburger Thierschutz-Verein von 1841)라고 칭했다. 애초부터 이들 동물보호단체의 주된 목적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동물에 대한 잔인성과 폭력이 인간에 대한 잔인성과 폭력으로 자라난다는 취지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계몽하고 교육하려는 것이었다.⁶ 〈함부르크 1841년 동물보호협회〉도 “동물에 대한 잔인성은 천하고 낮은 민족의 가장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훔볼트(Humboldt)의 언명에 따라, 그러한 문화적 사명(Culturaufgabe)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라는 “인식이 민족 속에 널리 퍼져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동물보호단체의 임무”라고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대의 잔혹성과 반대로 금세기에는 인간을 대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인류에이고 따라서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까지 확장되기를 바란다”⁷고 했다.

이들 동물보호협회가 주로 했던 활동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고발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강화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전국적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선 단체가 바로 이 〈함부르크 1841년 동물보호협회〉였다. “함부르크 경찰 포고문에 나타난 동물친화적인 내용은 모두 우리의 제안에 따른 것”⁸이라고 할 만

6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인간은 폭력, 잔인함 그리고 야만성의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듯한 감정을 지녔는데, 여기에는 동물학대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Maurice Agulhon (1995), “Das Blut der Tiere. Das Problem des Tierschutzes im Frankreich des 19. Jahrhunderts,” *Der vagabundierende Blick. Für ein neues Verständnis politischer Geschichtsschreibung*, Frankfurt, pp. 114-153.

7 Fest-Commission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s von 1841 (1891) (Ed.), *Festschrift zur 50jährigen Jubel-Feier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 von 1841*, Hamburg, pp. 15-19.

끔 입법화에 자부심을 드러냈던 이들은 북독일연방이 출범하자, 동물보호는 단순히 경찰이 풍기 문란과 같은 경범죄로 단속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북독일 전역에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1868년에 “함부르크 동물보호단체 이사회[뤼어스(J. H. Lührs) 박사와 그 동지들]는 다른 동물협회와 합의하고 ‘보편적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해당 위원회에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북독일연방의 제국의회에 제출했다.”⁹ 이에 대해서는 1860년 각 지역동물협회의 이사진이 드레스덴에 모여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¹⁰ 그러자 의회는 일반형법의 초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북독일연방 수상에게 회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물보호협회의 연대 의식은 통일 이후 더욱 투철해졌다. 이제 국가의 통일로 전국적인 관련법 제정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소극적인 협회도 적지 않았기에 다소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¹¹ 결국 1884년에 협의체 형식의 전국 조직인 <동물보호협회 전독일연방>(Verband der Thierschutz-Vereine des Deutschen Reiches)이 결성되었다.¹² 이들 연맹체는

8 Fest-Commission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s von 1841 (1891) (Ed.), *Festschrift zur 50jährigen*, pp. 15-19.

9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des Norddeutschen Bundes. I. Legislatur-Periode, Session 1868, Bd. 1, p. 364.

10 각 지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물을 보호하다 보니 각 지역 간의 편차가 컸다. 가령 프로이센의 경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어길 경우 벌금이 50탈러 혹은 최고 6주 징역형이었던 데 반해, 작센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차원에서 최고 3개월 징역형이었다. 이들 청원자는 작센의 방식을 선호했다.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des Norddeutschen Bundes. I. Legislatur-Periode, Session 1868, Bd. 2, p. 314.

11 Miriam Zerbel, *Tierschutz im Kaiserreich*, pp. 81-82.

12 1884년에 전국적으로 148개(회원수 61,347명) 동물보호단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72개(회원수 46,885명) 조직만이 여기에 가입했다. 1901년에는 전국적으로 245개(회원수 98,570명) 조직이 있었고 그 가운데 130개(회원수 77,730명) 조직이 가입했으며, 1913년에는 413개(회원수 155,118명) 조직 가운데 222개(114,370명)가 가입했다. Miriam Zerbel, *Tierschutz im Kaiserreich*, pp. 88-89에 있는 표를 참조. 가입하지 않은 지역단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연맹의 노선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급진

그 위상을 과시하고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운동의 정치화를 시도했고, 이들이 내세운 중요한 정치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교 도축법이었다.

동물보호론자가 초기부터 유대교 도축법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¹³ 이들은 ‘공공’에 드러난 동물학대, 가령 도로에서 마부가 늙고 힘없는 말을 학대하는 것 등을 주로 겨냥했고 도축장에 관한 관심은 그다지 없었다.¹⁴ 하지만 육식의 증가로 대규모 도축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곳에서 나타나는 동물학대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축장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논의도 도축 자체보다는 이에 관련된 공공의 도덕적 행위를 먼저 문제로 삼았다. 가령, 도축될 가축을 시내로 몰고 가면서 나타나는 학대, 이제 애완동물로 여겨지는 개를 역축(役畜)으로 이용하는 행위, 여성이나 아이의 도축장 출입 등이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다. 함부르크 도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에 집중해서 활동을 벌였던 반면, 유대교 도축법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동물보호단체가 간행하는 당시의 잡지에도 유대교 도축법을 비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언급 내용도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가축의 유대교 도축법, 곧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글의 필자는 이 방법으로 도축하면 피를 모두 뽑아내기 때문에 도축장에는 “피 냄새가 배지 않아 가축이 도축대에 오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¹⁵라고까지 말했다. 이즈음 소위 ‘인간적인’ 도축법에 대한

적인 동물실험반대론자들의 경우 이 연맹이 동물실험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13 Robin Judd (2007), p. 64.

14 당시 제정된 초기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만 처벌할 수 있었다.

15 Anto Fuster, “Der Verein gegen Thierquälerei (Fortsetzung),” *Hamburger Thier-Freund* No.11 (1858.3.12.), p. 4. 단, 저자가 이 협회의 회원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다른 연구서에서도 초창기에 동물보호운동이 유대교 도축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에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당분간은 이 ‘인간적인’ 도축법에 대한 확실한 정의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도축방식이 여럿 등장하긴 했지만, 그 방식이 정말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유대교 도축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적어도 1870년대까지는 유대교 도축법은 동물보호론자의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유대교 도축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온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스위스와 영국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양국에서 동물학대법이 통과된 이후 1850년대 중반부터 유대교 도축법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1855년 런던에서 두 유대인 도축자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동물학대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소당했다.¹⁶ 피의자들은 “최가 아니라”고 변호했기 때문에, 결국 판결은 목을 먼저 날카로운 칼로 자르고 피를 빼내는 유대교 도축법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죽이는 일반적인 도축법에 비해 고통을 더 주는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¹⁷ 하지만 의사와 도축자 등에

동의한다. “하나의 예외라면 1840년대에 뮌헨의 동물보호론자인 이들은 유대교 도축법을 ‘섬뜩하고’ ‘잔인하다’고 묘사했다.” Robin Judd (2007), p. 65, 주 15. 그럼에도 그 내용이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동물학대에 대한 여러 묘사 가운데 몇 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후에는 이러한 뮌헨 동물보호단체의 연례보고서에서조차, 1870/71년 독일통일 때까지 유대교 도축법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16 “Police,” *The Times*, 17. October 1855, p. 9.

17 20세기 초까지 동물을 죽이는 방식은 머리의 뇌를 곤봉이나 망치로 치거나, 목을 꺾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인 도축법과 비슷하게) 칼로 목을 베는 방식이었다. 앞의 두 가지는 일단 동물을 기절시키고 도살한다는 점에서 동물이 고통을 덜 느낀다고 여겼다. 하지만 곤봉이나 망치를 사용해 단번에 기절시키지 못하면 고통이 더 심하기에, 동물보호론자의 요구대로, 미리 마스크를 씌우는 더 정교한 방법으로 타격을 가해 단숨에 죽이는 더욱 ‘인간적인’ 방식이 고안되었다. 나중에는 전기나 약품으로 미리 기절시킨 다음에 도축했다. 최대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에 반해 유대인 도축법에서는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특수한 칼로 먼저 목을 베어 피가 완전히 빠지도록 놔둔 다음에 사체를 해체했다. 동물보호운동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종의 학대행위였다.

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 도축법이 피를 빼내기 때문에 도살하는 동물이 더 빨리 기절한다고 하여 오히려 고통이 적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 기절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가축이 그동안에 몸부림을 친다고 비판했다. 곧 후자에 따르면, 유대교식 도축법에 따라 피를 먼저 빼기 시작하여 가축이 완전히 사망하는 데까지 평균 15분이 걸리지만, 일반적인 방식(in the common way)으로, 곧 피를 빼는 과정을 생략하면, 약 3분이 걸린다는 주장이었다.¹⁸

그러자 독일의 동물보호협회도 이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동물보호협회 전독일연맹>이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인 1881년 비스바덴 대회에서 드디어 제국정부에 도축방식을 개혁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물학대방지법에 관련된 형법을 개정할 때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변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협회는 지방정부와 제국정부에 이에 대한 요구를 계속 제기했다. 1886년 이제 전국적인 연맹체를 결정한 동물보호협회는 결국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도축하는 모든 방식이 가축을 빨리 고통 없이 죽이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은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도축장에서 지키고 검사하는 사람이 도축되는 가축을 우선 기절시키고 피를 뺀 다음에 비로소 죽이고 해체될 수 있도록”¹⁹ 해달라고 탄원했다. 그

18 “Die Anklage der jüdischen Schächter von London durch die Gesellschaft gegen Thierquälerei,” *Allgemeine Zeitung des Judenthums*, vol. 19, No. 47 (1855), pp. 599-600. 이에 대한 판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보도한 독일의 유대계 신문은 유대교 도축법을 옹호하면서 “이 동물보호협회는 유대인 푸주한은 수소나 황소를 죽일 때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다룬다고 확신하여, 1849년 그것을 금지한 의회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덜 잔인한 기독교적 도축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막힌 생각을 했다. [...] 이러한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 곧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신경이 거슬리는 것과 실제 당하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원래 이 신문이 인용한 『더 타임즈』(*The Times*)의 기사에서는 유대인과 ‘일반’ 도축법으로 구분했는데, 유대인 신문에서는 이를 유대교와 기독교 도축법으로 대비시켰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러면서 도축하는 전후로 가축을 바닥에 내팽개친다든지 또한 도축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축을 묶은 채 기다리게 하는 동물학대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교 도축법과 관련해서는 칼로 목을 가른 다음 가축이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 곧 가축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평균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도축하기 이전에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국의회 청원위원회는 1886년 5월 22일에 토론을 벌였고, 결국 토의 안건으로 채택했다.²⁰

물론 이에 대해 유대인 집단도 가만있지 않았고 반대 청원을 제출하면서 유대교 도축법을 옹호하는 자연과학자 50명의 소견서를 첨부했다. “이러한 요구[피를 뽑기 전에 기절시키는 것]가 법률로 규정된다면 우리 종교의 예식에 미치는 엄중하고도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모든 가축은 [...] 우리 종교의 규정에 따라 의례의 방식대로 도축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²¹ 그러면서 1882년 작센 정부가 수의사들에게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도록 했던 결과를 언급했다. 작센의 위원회는 유대교 도축법이 동물에게 특별히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아니라면서, 드레스덴 동물보호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유대교 도축법에서 도축하기 위해 먼저 가축을 눕히는 행위는, 동물보호협회가 주장한 것처럼,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는 다른 연구 결과도 첨부했다. 이 반대 청원은 동물보호협회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하며, 자신들의 종교를 무시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19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6. Legislaturperiode, II Session 1885/1886, Anlagen Bd. 5, Nr. 191, p. 934 (Journ. II, Nr. 13894).

20 나중에 개정된 청원서에는 “도축장을 비판계자, 특히 청소년에게는 출입을 금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동물보호가 동물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청소년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1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7. Legislaturperiode, 1. Session 1887, Anlagen Bd. 2, Nr. 97, pp. 815-825.

3. 유대교 도축법의 정치화

결국, 1887년 제국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논의되었지만, 유대교 도축법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에 밀려서 더는 논의되지 못했다. 곧 의원들은 동물학대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유대교 도축법은 종교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라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겼다. 무엇보다도 당시 가톨릭에 반대하는 문화투쟁(Kulturkampf)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때였던 만큼, 유대교 도축법도 동물보호보다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더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때 반유대주의자로서 최초로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오토 뵈켈(Otto Böckel)이 유일하게 유대교 도축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했다. 반유대주의자답게 그는 유대인은 “외국에서 온 동방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교 도축법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 동방민족의 해묵은 관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이 만약 독일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독일인과 동물보호협회의 관점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이 안건을 수용하여 국가가 유대교 도축법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²² 그가 연설할 때 조소와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연설은 이후 반유대주의 선동에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예견케 했다.

투표 결과 다수는 이 문제를 참의원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유대교 도축

22 유대인 도축법에 찬성하던 독일자유당(Deutsch-freissinnige Partei) 의원 막스 브뢰멜(Max Broemel)이 피르호(Virchow) 교수의 견해를 제시하자, 뵈켈은 “동료이신 브뢰멜 의원께서는 피르호 교수의 선명한 판단을 아주 특히 객관적이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피르호 교수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르호 교수는 명백한 유대인 친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브뢰멜은 연설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원이신 뵈켈 박사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보여주교자 하는 그 인간적인 정신을 당신의 동료 시민에게도 전혀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s, VII. Legislaturperiode, I. Session 1887, pp. 636, 638.

법의 내용은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 이후 참의회는 전국적인 입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각 주에서 먼저 해당 법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청원서를 기각했다. 그러자 동물보호협회는 이제 각 주 정부로 방향을 돌려, 그곳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그 결과 여러 주에서 도축장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대다수 유대교식 도축법은 허용되었다. 다만 작센에서는 이와 반대로 1892년에 도축될 모든 가축에 대해 사전에 기절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유대교식 도축법이 사실상 금지되었다.²³ 바덴과 바이에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러한 제안은 부결되었다.

동물보호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제국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무엇보다도 1890년대에는 반유대주의가 반짝 호응을 얻었던 것이 이러한 노력을 고무시켰다. 1893년 제국의회에는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의원 16명이 진출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은 잔인성에 반대한다면서 인류애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대교식 도축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유대인의 독일 내 이주를 금지한다든지 독일인이 아닌 사람을 추방해야 한다는 등의 반유대주의적 제안을 함께 같은 법안에 요구함으로써,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애써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유대교식 도축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드러내자, 제국의회 본회의에는 계속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물보호협회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894년, 1895년, 1898년에 제안하자, 1899년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논점이 분명 동물보호보다는 반유대주의로 기울어졌다.

23 작센 주가 1892년 유대인 도축법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아직 전문적인 연구가 없어서 분명히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체로 반유대주의가 주된 동기로 거론된다. 다만 당시 그곳에는 유대인의 수가 적었기에, 동유럽에서 오는 유대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혹은 유대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러한 법령이 오히려 가능했다는 등의 '주변적인' 논의는 있다.

십여 년 전에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했던 오토 뵈켈 외에도²⁴ 이 문제를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이 몇몇 더 있었다. 비록 과학자들의 판단도 양분되기는 했지만, 반유대주의의 논의 앞에서는 그들의 견해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유대교 도축법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이들 가운데에는 칼 립크네히트(Karl Liebknecht)도 있었다²⁵]은 이들 반대론자에게 사냥과 동물실험과 같은 잔인성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토론이 반유대주의에 휩쓸려 동물보호의 취지가 흐려지자, 수의학 교수이자 남독일인민당(Süddeutsche Volkspartei) 소속이던 레온하르트 호프만(Leonhard Hoffmann)은 원래 자신은 유대교 도축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지만, 반유대주의자는 아니라면서, 그가 보기에 이 안건은 주로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종교적인 의구심에서 이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²⁶ 결국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로 끝났다.

종교적 자유의 억압에 내심 불안했던 가톨릭중앙당은 1900년 이에 대처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일명 ‘관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안은 모든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종교적 활용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문화투쟁의 결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예수회 금지 법안의 폐기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하려

24 그는 유대인 종교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면 “유대인이 아닌 시민이 유대인 방식으로 도축하면 아마도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터인데, 유대 종교인은 예외적으로 그럴 권리를 획득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tags X. Legislaturperiode, I. Session, 1898/1900, Bd. 3, p. 1924.*

25 “그들이[반유대주의자] 이 제안을 내놓은 것은 단지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의 이웃인 유대인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저와 —그리고 이 제국의 회 모든 의원에게도—너무나 명확합니다.” *Stenographische Berichte 1898/1900, Bd. 3, p. 1926.*

26 “나는 분명 유대교 도축법보다 머리를 치는 다른 도축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식 도축법이 오늘 논의되는 관점에서처럼 금지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Stenographische Berichte 1898/1900, pp. 1929–1930.*

는 안건에서는 공통된 행보를 보였던 자유주의자는 반(反)가톨릭주의를 앞세워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자가 보기에는 유대교 도축법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관용법’이 아닌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자 1907년에 이 양자를 분리하려는 새로운 법안이 나왔다. 제국의회에서 계속 관용법이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자, 중앙당 그뢰버(Adolf Gröber) 의원이 특별히 유대교 도축법만을 겨냥한 법안(형법 제360조 3항)을 발의했다. 이것은 제국형법의 개정을 통해 “주 정부의 법이 도축법과 관련해서 어떤 종교적인 집단의 의례에 관한 규정에 개입할 경우” 그것을 위법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자유당과 보수당은 모두 반대했다.²⁷ 이후 1911년에 다시 제국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이때 바이마르 출신의 가톨릭중앙당 의원인 그라에프(Graef)는 유대교 도축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견해로는 드디어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도축법의 금지가 연방정부의 뜻이 전혀 아님에도 개별 영방국가가 그러한 법률제정에 나서는 위험성에 대해 연방정부가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어떤 영방국가와 자유도시도, 자유와 평등한 국민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비난이나 받을 뿐인 그러한 결정을, 자기 공국의 의회에서 아마도 일시적으로나마 다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독일에서 주정부로는 유일하게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하고 있던 작센 공국 정부가 1910년에 그 금지령을 이미 해제했다.

함부르크에서 조직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은 대략 1880년대 중반이었다. 프리드리히 랍(Friedrich Raab, 1859-1917)을 중심으로 극우보수주의자는 1884년에 정치결사체를 결성하고 잡지를 만들면서 공개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선거에 임하면서 세를 불러 나갔지

27 Stenographische Berichte 1898/1900, p. 3813.

만,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회민주당이었다. 다만 반유대주의 선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유대교 도축법 문제도 언급하기는 했다. 프리드리히 랍은 독일의 다른 반유대주의 자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 도축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선거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함부르크 시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랍은 “‘이러한 동물학대가’ 계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빼고 모두가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갖고 싶어 하는 예외적인 위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제국정부와 제국의회에서 유대교 도축법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함부르크에서는 이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이곳의 정치 상황이 제국의 그것이나, 특히 작센과는 더욱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함부르크에는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에서 건너와 정착한 세파르디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유대인이 존재했지만, ‘함부르크 시스템’(Hamburger System)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하게 느슨한 통합된 조직체를 유지했다. 이곳 유대인은 1848년 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1860년대까지는 독일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독일 사회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함부르크 근처인 알토나(Altona)에 일찍 형성된 유대인 공동체는 이후 조직력이 약화했다. 독일 사회에 통합된 유대인은 공동체를 떠나 함부르크 시내에 거주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²⁹ 사회적으로 통합된 이들 유대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함부르크 부르주아 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던 함부르크 유대인에게도 반유

28 Daniela Kasischke-Wurm (1997), *Antisemitismus im Spiegel der Hamburger Presse während des Kaiserreichs, 1884-1914*, Hamburg, p. 370.

29 1870년대 함부르크 주민의 수는 약 35만 명이었고 유대인은 약 1만 4천 명이었다. 당시로서는 유대인의 비율이 독일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대주의라는 정치적 선동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제국의회에 반대 청원을 넣기로 한 유대인 전국협회에서 관련된 문서와 청원서의 내용을 1886년 말에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에 보내오자, 이에 함부르크 총랍비(Oberrabbiner)도 호응하여 “수많은 동물보호협회가 제국의회에 유대인 도축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이 안건은 유대인에게 최고로 중요하기”에 반대 청원에 함부르크 공동체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유대교 도축법이 동물학대라는 동물보호협회의 주장은 치료학 분야, 특히 동물치료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서에 의해 논박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연히 항상 최초이자 최고로 꼽히는”³⁰ 함부르크 공동체가 반대청원에 나서도록 함부르크 공동체 이사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에 이사회는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토론했고,³¹ “동물협회에 반대하여 제국의회에 청원하기”³²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 청원서를 모아서 4월 27일에 보내면서 새로 전문가 소견서 9부를 만들어서 첨부했다.³³ 반유대주의가 준동하면서 1890년 베를린에는 <반유대주의 방어협회>(Verein zur Abwehr des Antisemitismus)가 생겨났고, 1894년에 이 협회가 “유대인-체레에 따르는 도축방법(Schächten)에 대한 소견서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 1천 마르크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는 “이를 [...] 만장일치로”³⁴ 가결하여 승인했다.

30 CAHJP AHW-151.15.XI (Sammelakten): Schreiben des Oberrabbiners vom 27. Dez. 1886.

31 CAHJP AHW-151.15.XII (Sammelakten): Tagesordnung für die 342ste Sitzung des Gemeindevorstandes am Sonntag den 9. Jan. 1887.

32 CAHJP AHW-151.15.XI (Sammelakten): Schreiben des Vorsitzenden vom 10. Jan. 1887.

33 CAHJP AHW-151.15.XI (Sammelakten): Petition der Israelitischen Gemeinde zu Altona betreffend des judisch-rituelle Schlachten vom 27. April 1887.

34 CHAJP AHW-346.5 (Protokolle des Repräsentenkollegium): Beschluss der 20. Sitzung des Repräsenten-Collegiums vom 1. April 1894.

4. 함부르크의 유대교 도축법: 불안한 타협

문제는 이렇게 정치화된 동물보호운동에 대해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가 대응한 방식이었다. 유대교 도축방식에 관한 정치권의 논쟁은 반유대주의라는 틀 속에 갇혔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유대인의 방식도 그러한 틀에 갇히면서 이들이 선택할 폭도, 곧 동물보호운동과 타협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사실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었다면, 타협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함부르크와 같은 독일 제정기에 존재하던 97개 도축장에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28개 도축장에서는 유대교 도축법의 허용을 명시했고 명확하게 금지한 곳은 거의 없었다.³⁵ 이는 제국의회의 정치적 논쟁과 달리, 현실에서는 유대교 도축법을 둘러싼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보수적이었던 작센이나 바이에른에서는 정치권의 논쟁이 현실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함부르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결과 동물보호운동과 유대교 도축법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그리 크지 않았다.³⁶ 그것은 무엇보다 도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함부르크 시내 중심부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도축장에는 그 내부에 유대교 도축을 위한 공간과 시설(Für israelit Schlachter)이 별도로 운영되었다.³⁷ 당시 유대인 가운데 도축자는 모두 대략 80여 명이었다.³⁸ 이들은 함부르크 내에 존재하던 푸주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으니,

35 Stenographische Berichte 1887, Anlagen Bd. 2, Nr. 97, p. 820.

36 1890년대에 함부르크에는 동물보호단체 2곳이 더 결성되어, 총 3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Staatsarchiv Hamburg 311-2 I-III 1344, Verbesserung der Beleuchtung im Schlachthaus bei den Vorsetzen.

38 CAHJP AHW 385: Liste der Israeliten im Hamburger Staate. 이들 수치는 1895년경에 조사한 유대인 명부에 나오는 직업란을 참조하여 일일이 세어본 결과이다. 직업명으로 도축자(Schlachter), 도축자 장인(Schlachtmeister), 도축자 직인(Schlachtergeselle), 혹은

1860년대 이후 시민권을 얻으면서 푸주한 직업을 택한 사람이었다. 유대인 공동체의 총랍비와 문화위원회(Kultus-Commission)가 이들 가운데 선임하여 유대인 도축을 맡겼을 터인데, 선발한 이후에는 코서 음식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하고 교리에 부합하는지 계속 감독했으며, 잘못이 적발될 때는 증명서를 회수했고 그 사실을 유대교 회당 앞 게시판에 공시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교리에 부합하는 것만을 감독했기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위 ‘동물학대’에 민감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종종 이에 공식적인 항의가 들어오곤 했다. 예컨대, 1880년 4월 <킬 동물보호협회>(Kieler Thierschutzverein) 회장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이곳 유대인 공동체의 도축자가 그 직책을 행하기에는 상당히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함부르크 유대교 공동체 총랍비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그[유대인 도축자]는 소심함으로 인해 전혀 허용할 수 없는 동물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3월 8일 도살할 황소에 충분하지 못한 절개술을 펼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동물학대의 위험성이 재발하지 않도록”³⁹ 킬 동물보호협회 회장은 간청했다. 물론 여기에서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유대인 도축법 자체가 아니라 도축자의 기량이었다. 실제로 다른 도시에서도 유대인 도축자의 실력이 그다지 출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⁴⁰

이러한 사실이 당시 도축방식에 동물보호협회의 관심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그만큼 도축법의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드물긴 하지만 유대교 도축자(Schächter)라는 용어로 표기되었다. 장인과 직인 사이의 비율은 1:2 정도였고, 이들 사이에는 나이도 대략 최소 10살에서 20살 이상 차이가 났다.

39 CHAJP AHW-127.16 (Sammelakten): Schreiben des Vorstandes des Kieler Thierschutzvereins vom 8. April 1880.

40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의 경우가 그렇다. “1890년경에 유대인 도축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푸주한은 9명이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메이어(Meyer) 박사[랍비-필자]가 감시해야만 했다.” Siegfried Wittmer (1988), “Geschichte der Regensburger Juden im Zeitalter des Liberalismus und Nationalismus zwischen 1841-1902,” *Verhandlungen des Historischen Vereins für Oberpfalz und Regensburg*, vol. 128, pp. 81-112, 인용은 pp. 99-100.

것을 말해준다. 이보다 한참 후인 1911년에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 도축자를 양성할 학교를 세울 계획을 세웠고, 함부르크 공동체에 구체적인 교과과정과 정관을 함께 동봉해 보내면서 “우선 3년 동안 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함부르크 유대인 공동체는 요구받은 기부금을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했다.⁴¹ 이렇듯 동물보호단체의 새로운 방식을 제한했던 데에 비해, 유대인 공동체는 우선 종교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축법 개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다.

1892년 함부르크 도축장이 외곽인 상파울리(St. Pauli)로 이전하여 공공 도축장으로 재개장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 도축법은 허용되었다. 공공 도축장이 설립되면서 함부르크에서 도축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했고, 도축된 것은 현미경의 검사를 거쳐야 했다. 특히 동물보호협회가 계속 도축장의 ‘동물학대’를 고발하면서 도축하는 과정도 더욱 엄격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제10조에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 어떤 동물학대도 피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큰 가축(Großvieh)과 [...] 돼지는 죽이기 전에 머리뼈에 타격을 가해서 기절시켜야 한다”⁴²고 하면서도 유대교의 예외성은 보장했다. 곧 큰 가축의 경우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축되는 가축을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이어 “유대교 도축을 위한 소를 도축하기 위해 눕히려면, 잭(Winde)을 사용하여 소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든지 “도축자가 도축할 준비가 되기 전에 도축할 가축을 묶어 놓으면 안 된다”라든지 “소, 송아지, 그리고 양을 유대교 방식으로 도축하는 요일과 시간은 도축장 운영 이사회(Schlachthof-Deputation)가 필요에 따라 정하고 공포한다”고 규정되었

41 CHAJP AHW-151.39.XI (Sammelakten): Schreiben der Freien Vereinigung für die Interessen des orthodoxen Judentums vom 25. Okt. 1911, Schreiben des Vorstandes an die Freie Vereinigung für die Interessen des orthodoxen Judentums vom 28. Nov. 1911.

42 Staatsarchiv Hamburg 377-11 (154) Verstöße gegen die Schlachthofordnung. Einzelfälle 1892-1937: Schlachthofordnung für den Schlachthof in Hamburg vom 16. August 1892.

다.⁴³

이어 몇 달 후에는 유대교 도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따로 상세하게 만들었다.⁴⁴ 여기에서는 먼저 가축 크기에 따라 도축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제1조), 이어서 제2조에는 큰 가축의 경우 “유대교 방식으로 도축할 때 가능한 한 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작은 가축을 유대교 방식으로 도축할 때는 좌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큰 가축을 낚히거나 작은 가축을 좌판에 놓는 것도 일단 유대교 도축의 전문가가 준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어 제3조에서 따르면, “유대교 도축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목을 자른 다음 죽임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는 근육경직이 있으면, 가축의 머리를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이 규정을 어기면, 1894년 4월 20일에 나온 도축장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벌금형 30마르크까지 혹은 그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도축 규정이 아주 엄격해졌음에도 함부르크 동물보호협회는 계속해서 도축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1900년에 <함부르크 1841년 동물보호협회>의 이사진은 함부르크 주정부에 다시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간적인 도축법’(humane Schlachtmethode) 가운데 하나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⁴⁵ 이미 1893년에 우리 협회는 시청 당국에 동일한 목적의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

43 이것은 전반적으로 1889년 1월 14일에 프로이센 정부가 “유대교 도축방식에서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Barbara Venerito, *Antischächtbewegung und Antisemitismus in Deutschland*, p. 96.

44 Staatsarchiv Hamburg 377-11 (176) Schächten (jüdisches rituelles Schlachten): Bekanntmachung, betreffend das Schächten auf dem Central-Schlachthof vom 5. Oktober 1892.

45 Staatsarchiv Hamburg 377-1 (165) Schlachtmethoden, insbesondere Einführung des Bolzenschußapparates und der elektrischen Betäubung 1893-1939: Ergebnis des Gesuchs abseiten des Vorstandes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s von 1841” vom April 1900.

도 이 청원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우리 협회의 이사진은 아주 깊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곳 도축장이 양과 송아지를 도축 전에 기절시킬 수 없는 이유로 항상 끔찍한 것이 도축하기 전에 가축을 기절시키기 위해 머리에 가격을 가하면, 그로 인해 이들 가축의 머리가 손상되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가축을 도축 전에 기절시켜도 그것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의미였다. “이미 19세기 내내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을 동물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점차 더 인정되었고, [...] 함부르크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에 “시청 당국에서는 함부르크의 중앙도축장이 도축방식의 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를” 청원했다.

이 협회가 다음 해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함부르크 중앙도축장의 행정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앞서 작은 가축을 마취하여 도축하는 시연을 실제 도축장에서 참관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시연한 결과, 기절한 뒤에 도축한 가축의 머리는 그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거나 단지 미미한 정도로만 떨어졌다”면서 도축장 소장이던 보이젠(Boysen)은 위원들과 협의한 후 “이미 베를린에서 하는 것처럼 도축자 양성을 위한 도축학교를 세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제 함부르크에서도 도축하기 전에 기절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이에 관련된 규정이 바뀔에 따라 유대교 도축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절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도축법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았다. 곧 이에 관련된 규정을 바꾸면서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축되는 가축은 예외로 하고”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대인 도축 날짜와 시간은 필요하면 도축장 운영위원회가 정해 공고한다.”라면서⁴⁶ 큰 변화는 없었다. 다

46 Staatsarchiv Hamburg 377-11 (119) Tierquälerei auf dem Schlachthof 1878-1947: Auszug aus dem Protocoll der Schlachthof-Deputation vom 11. April 1901. 이 서류에는 유대인 총랍비인 히르쉬(Hirsch)가 편지를 보내 유대인 도축자 쾨스킨트(Süßkind)를 더

른 곳에서도 같은 결론이 보고되었다. 곧 “황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베어셰(Behrsche) 회사가 만든 기절시키는 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함부르크 1841년 동물보호협회’가 보낸 청원서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1906년 5월부터 12월까지 7,100마리 황소를 성공적으로 기절시켰다. 이 협회의 1905/6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곧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도축장에서 이 우수한 도구가 곧 모든 도축 동물에게 전반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강조는 원문]⁴⁷라고 하였지만 유대인 방식에는 그것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함부르크 동물보호협회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를 제보하고 또한 도축장에 ‘인간적인 도축방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유대교 도축에 해당하지 않은 돼지를 도축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학대, 특히 갈고리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했다. 1913년 9월에 함부르크 도축장의 동물학대가 도축전문잡지에 실려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도 돼지에 대한 학대에 관한 것이었다. 돼지 도축에 사용되던 갈고리에 대해 함부르크 도축장 행정당국이 최소한의 반응을 보였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14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도축장 당국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7월 1일부터 돼지를 마취할 때 갈고리 사용을 금지하고 목밴드를 사용하도록 바꾸었다. 물론 이때에도 유대교 도축방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함부르크에서 시행되는 유대교 도축법은 [...] 도축자가 와서 목을 자를 때까지 동물을 바닥이 눕혀놓음으로써 동물을 특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유대교 도축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유대인 도축자는 유대인 공동체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7 Ernst von Schwartz, *Fünf Jahre Kampf um humanes Schlachten der Tiere! Eine Zusammenstellung und kurze Beschreibung der Hauptereignisse und der neueren Kundgebungen im Kampfe gegen das betäubungslose Schächten* (Leipzig, 1908), pp. 30-31.
- 48 Staatsarchiv Hamburg 377-11 (119) Tierquälerei auf dem Schlachthof 1878-1947:

대교 도축의 시행령을 잘 지키지 않아서 불거진 문제였다.

물론 유대교 도축에 대한 시간을 따로 정하면서 도축장의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904년 7월에 “며칠 전부터 불거지고 어제 첨예하게 되었던 기독교 도축업자와 유대인 도축업자 권력투쟁(Machtkampf)이” 발생하여, 도축장 운영이사회와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기독교 도축업자는 오랫동안 유대인 도축업자와 고기를 거래하면서 쌓은 모든 관행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시 말해 유대인이 [...] 도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⁴⁹ 하지만 이 ‘권력투쟁’은 동물보호나 유대교 의식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고, 본질은 상업적 거래와 이윤 때문이었다. 한 유대인 도축업자가 시간을 지킬 수 없자, 기독교 도축업자는 서로 짜고 함부르크 중앙도축장과 협의하지 않은 채 상당한 수의 황소를 어떤 도축자에게 맡겨서 유대교 도축법으로 도축했다. 이것은 도축장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유대인 도축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으로 박탈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유대인에게 허용된 도축시간이 짧아서 정해진 시간만으로는 필요한 양만큼 도축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유대인 지도자는 도축장 운영자에게 유대인 도축 시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도축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유대인 가족이 유대교 의식에 맞는(koscher) 고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1894년 5월 28일 자 도축장 운영위원회 공고문 제4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유대교식 도축 시간을 허용할

Abschrift von der Brief des Berliner Tierschutzverein an den Senat der Freien Reichsstadt vom 16. Oktober 1913 über die Greuel auf dem Hamburger Schlachtviehhof. 함부르크 수의사였던 베르너(Werner)가 『독일 도축장 신문』(*Deutsche Schlacht- und Viehhof-Zeitung*)에 글을 써서 알려진 것인데, 이것을 다시 베를린 동물보호협회의 잡지인 『동물변호사』(*Anwalt der Tiere*)의 기사에서 확인되어 베를린 동물보호협회가 함부르크 도축장에 개선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49 Staatsarchiv Hamburg 377-11 (12) Allgemeine Angelegenheiten: Brief vom Schlachthof und Viehmarkt-Verwaltung an den Präses der Schlachthofdeputation Herrn Senator Dr. Traun vom 28. Juni 1904.

수 있다고 했기에, 정해진 날짜에서 [도축하는] 시작 시간을 앞당기도록 허용했다.”⁵⁰ 이렇듯 유대교식 도축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함부르크에서 그다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대교 도축법을 거친 고기를 유대인만 섭취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일어났다. 바이마르 시기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곧 당시 함부르크에서 유대인 인구는 약 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유대교 도축법에 따라 도축된 가축의 비율은 시 전체에서 도축된 것의 12퍼센트를 차지했다.⁵¹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소와 같은 대형 동물을 유대교 방식으로 도축했을 때 하반부는 코셔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고기가 신선함을 유지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나머지가 함부르크 내에서 비유대인에 의해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또한 비용의 문제도 작용했는데, 유대교 도축법은 기절시키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도축자와 칼 그리고 가축을 묶는 약간의 시설로 가능했다.⁵²

50 Staatsarchiv Hamburg 377-11 (12) Allgemeine Angelegenheiten: Auszug aus dem Protokoll der Schlachthofdeputation vom 14. Juli 1904.

51 Ina Lorenz (1987), *Die Juden in Hamburg zur Zeit der Weimarer Republik*, Bd. 2 (Dokumentation), Hamburg, p. 787, Nr. 8. Schächtung in Hamburg.

52 소의 경우 유대인 도축법을 거쳐도 상위 부분만 코셔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기에 비유대인에게 팔았다. 함부르크의 코셔 음식 담당자는 도축장에서 의식이 있는 채 도축된 가축의 약 53-65퍼센트를 자신이 담당한다고 밝혔고, 함부르크 중앙도축장 운영 위원이었던 노이만(Neumann)은 유대교 도축법에 따라 도축된 동물 가운데 49퍼센트가 코셔 음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퍼센트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대교식으로 도축된 가축이 모두 코셔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유대인을 위한 코셔 음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bin Judd (2007), p. 197.

5. 맺음말

독일 제정기에 동물보호운동이 정치화되면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실제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아직 첨예화되지 않고 있었다. 작센이나 바이에른과 달리, 함부르크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것은 우선 이곳에서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업적 자유가 크게 보장된 함부르크에서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정치화되지 않았다. 실제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동물보호운동과 유대교식 도축법이,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대립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교 도축법의 개정 요구에 반유대주의가 스며들자, 이에 놀란 유대교 공동체가 동물보호운동과 타협하기보다는 그것을 종교적 박해로 받아들였다. 이에 유대교 도축법이 ‘개혁’될 기회는 더욱 사라졌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동물보호운동에 참여했다.⁵³ 게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대로 유대교 도축법에 대해 단일한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었다. 특히 새로운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도축법의 시행에 관해 찬성하는 유대인도 더러 있었다.⁵⁴ 이들은 유대교 도

53 예컨대 함부르크에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었던 바르부르크(Warburg) 이름이 어릿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함부르크 동물보호단체의 장을 지내기도 했다.

54 가령 오펜바흐(Offenbach) 동물보호협회의 경우 1906년에 유대인이 적어도 43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협회는 1906년에 전국연합회 토론회에서 도축하기 이전 기절시키는 것의 의무화에도 찬성했다. “Das Schächten auf dem Verbandstage der Tierschutzvereine des Deutschen Reiches,” Berichte der X. Versammlung des Verbandes der Tierschutzvereine des Deutschen Reiches vom 2.-4. Oktober 1906, Nürnberg, p. 3. 이들은 대부분 소위 ‘자유주의적’ 혹은 ‘개혁적인’ 유대인으로 독일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정통교리’를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축법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유대교 도축법은 명확한 교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고, 도축 전에 가축을 마취하는 소위 ‘인간적인’ 도축법에 동의했다.

축법을 전통에 맞게 시행하기보다는 개혁하고자 했다. 1886년 제네바에서 유대교회와 동물보호협회 사이에 협약을 맺은 것과 같은 형태도 존재했거니와,⁵⁵ 동물보호협회와 비공식적으로 타협과 공존을 옹호했던 유대인도 적지 않았다.

바이마르공화국을 거치면서 동물보호운동은 더욱 정치화되고 극단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타협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결과 나치가 1933년 유대교 도축법을 사실상 금지했을 때도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는 이를 종교적 박해로만 이해했다. 그래서 일단의 타협주의자들이 유대교 도축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다수는 이를 거절하고 차라리 외국에서 코셔 음식을 수입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들은 이미 제정기부터 생겨난 갈등의 도식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 종교상으로 다른 도축법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자료

Staatarchiv Hamburg

The Central Archives of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6. Legislaturperiode, II Session 1885/1886, 7. Legislaturperiode, 1. Session 1887, X. Legislaturperiode, I. Session, 1898/1900.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Reichstages des Norddeutschen Bundes, I. Legislatur-Periode, Session 1868.

55 1886년에 양측이 맺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Règlement pour le mode d'abattage israelite, adopté par le Société Genevois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et part M. le Grand Rabbin Wertheimer. Pascal Krauthammer, *Das Schächtverbot in der Schweiz 1854-2000*, p. 44.

논저

- Agulhon, Maurice (1995), "Das Blut der Tiere. Das Problem des Tierschutzes im Frankreich des 19. Jahrhunderts," *Der vagabundierende Blick. Für ein neues Verständnis politischer Geschichtsschreibung*, Frankfurt, pp. 114-153.
- Brantz, Dorothee (2002), "Stunning Bodies: Animal Slaughter, Judaism, and the Meaning of Humanity in Imperial Germany,"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5, pp. 167-194.
- Brantz, Dorothee (2003), *Slaughter in the City: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battoirs in Paris and Berlin 1780-1914*, Dissertation of Univ. of Chicago.
- Fest-Commission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s von 1841 (1891) (Ed.), *Festschrift zur 50jährigen Jubel-Feier des Hamburger Thierschutz-Verein von 1841*, Hamburg.
- Füster, Anto (1858), "Der Verein gegen Thierquälerei (Fortsetzung)," *Hamburger Thier-Freund* No. 11.
- Judd, Robin (2007), *Contested Rituals. Circumcision, Kosher Butchering, and Jewish Political Life in Germany, 1843-1933*, Cornell Univ. Press: Ithaca and London.
- Jütte, Daniel (2002), "Die Entstehung und die Auswirkungen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ichstierschutzgesetzes von 1933," *IDB Münster, Tierschutz und Nationalsozialismus, Ber. Inst. Didaktik Biologie*, Suppl. 2, pp. 167 - 184.
- Kasischke-Wurm, Daniela (1997), *Antisemitismus im Spiegel der Hamburger Presse während des Kaiserreichs, 1884-1914*, Hamburg.
- Krauthammer, Pascal (2005), *Das Schächtverbot in der Schweiz 1854-2000: die Schächtfrage zwischen Tierschutz, Politik und Fremdenfeindlichkeit*, Zürich.
- Lorenz, Ina (1987), *Die Juden in Hamburg zur Zeit der Weimarer Republik*, Bd. 2 (Dokumentation), Hamburg.
- Mohnhaupt, Jan (2020), *Tiere im Nationalsozialismus*, München.
- Sax, Boria (2000), *Animals in the Third Reich: Pets, Scapegoats, and the Holocaust*, New York/London.
- Venerito, Barbara (2018), "Antischächtbewegung und Antisemitismus in Deutschland von 1867 bis 1914," Dissertation of Freien Univ. Berlin.
- von Schwartz, Ernst (1908), *Fünf Jahre Kampf um humanes Schlachten der Tiere! Eine Zusammenstellung und kurze Beschreibung der Hauptereignisse und der neueren Kundgebungen im Kampfe gegen das betäubungslose Schächten*, Leipzig.
- Wittmer, Siegfried (1988), "Geschichte der Regensburger Juden im Zeitalter des Liberalismus und Nationalismus zwischen 1841-1902," *Verhandlungen des Historischen Vereins für Oberpfalz und Regensburg*, vol. 128, pp. 81-112.
- Zerbel, Miriam (1993), *Tierschutz im Kaiserreich.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Vereinswesens*, Frankfurt am Main.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Humane” Slaughter and “Cruel” Kosher Slaughter (Schächt)

Song, Chungki*

Controversy over Kosher Butchering in
Hamburg in Imperial Germany

During the German Empire (1871-1918), kosher slaughter laws were one of the main triggers for the rise of anti-Semitism. In the 1830s, a number of animal protection societies were formed,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animal protection movement, which in the late 19th century began to take issue with the way animals were slaughtered and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new “humane” slaughter methods to reduce the “cruelty” of slaughter. Traditional Jewish slaughter methods became the primary target of these animal protection movements. Eventually, the Animal Protection Society petitioned the Reichstag to ban kosher slaughter, and there were several heated debates in the Reichstag. While the ban was never enacted nationally because it was argued that it would stifle religious freedom, there were attempts to ban it in several states, with some success. While it is true that anti-Semitis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to ban kosher slaughter, it is more important to see how kosher slaughter was practiced in everyday life rather than in political debates such as the Reichstag debat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Hamburg and aims to show that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Jewish slaughter was carried out without major problems and conflicts in everyday life. This is also why kosher slaughter was not banned nationwide at the time. However, the Hamburg Jewish community, alarmed by anti-Semitism, reacted only politically and did not actively work to improve the kosher slaughter method as advocated by animal rights activists. This made it difficult for the Jewish community to compromise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banned kosher slaughter.

Keywords Kosher butchering, Animal Protection Movement, Hamburg, Antisemitism, Animal Protection Society